

제307회 임시회
2012. 3. 12.(월)

심 사 보 고 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3. 12.(월)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수완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 2012년 2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2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3월 5일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수완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법인 정관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출방법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법인명칭 변경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출방법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나 시 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오송’이라는 명칭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임원의 선출방법만 정관으로 정하였던 사항을 임원의 종류, 정수, 그리고 선출방법까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업무관련부서인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부서와 충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이 가능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를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례”로 한다.

제1조와 제2조 중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임원 및 감사의”를 “임원과 감사의”로 하고, 제10호 중 “재단해산과 잔여재산”을 “재단 해산과 남은 재산”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원)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출방법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제7호 중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재단법인 <u>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u></p>		<p>재단법인 <u>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례</u></p>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민간 기업연구소 등을 지원 육성하 기 위하여 <u>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u> <u>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u> <u>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제2조(명칭 및 법인격)	명칭은 <u>첨단의</u> <u>료산업기술진흥재단</u> (이하 “재단”이 라 한다)으로 하며, 법인격은 재단 법인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법인격)	----- <u>오송첨단의</u> <u>료산업진흥재단</u> -----	-----
제4조(정관) (생략)	1. ~ 6. (생략) 7. <u>임원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u> <u>임면에 관한 사항</u> 8. ~ 9. (생략) 10. <u>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u>	제4조(정관)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임원과 감사의</u> ----- ----- 8. ~ 9. (현행과 같음) 10. <u>재단 해산과 남은 재산</u> -----	-----
제5조(임원)	<u>임원은 5명이상 15명 이</u> <u>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임</u> <u>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u>	제5조(임원)	<u>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u> <u>출방법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u>	-----

현행	개정안
<p>제6조(사업) (생략)</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u>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u>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p>	<p>제6조(사업)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u> ----- ----- -----</p>

관련법령 발췌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①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관
3. 그 밖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연구용 세포 등을 보관·관리하는 기관
 - 나. 실험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기관
 -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 라.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 이상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제정) 2010-01-01 조례 제 32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민간 기업 연구소 등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법인격) 명칭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으로 하며,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임원) 임원은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과 기획·정책 수립
2.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대내·외 협동연구 추진
3.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평가
4. 의료산업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충
5.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6.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지원기관의 설립·운영 지원
7. 그 밖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보조금과 현물
2. 충청북도의 출연금과 현물
3. 그 밖에 공공기관과 연구개발기관 등의 출연금과 현물

제8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4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한다.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관

제정 2010. 12. 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두고 필요할 경우 부설기관, 연락사무소 등을 국내·외에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기관, 국내·외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 및 폐지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운영 및 지원
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방향 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3.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상업화 지원
4.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인·허가 지원
5. 의료산업분야 과학기술의 저력배양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와의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6. 의료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관련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 수탁 및 위탁
9. 연구개발 자금조성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지원
10.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운영상황 지도 감독
1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사업의 부대되는 사업 및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하고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 ④ 제2항의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이내
3. 감사 1인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호선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추천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국장
2. 지식경제부 담당국장
3. 보건복지부 담당국장
4. 충청북도 담당국장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법인참여 의료연구 개발기관 및 출연기관 관계자, 부문별(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후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감사)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보수) ① 이사장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당해 안건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신분보장)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때

2.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에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때

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무관청 등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이사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법인의 자체 및 종합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결과를 받는 때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선임직 이사와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겸직 제한) 이사장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차입금 및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및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부설기관, 연락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문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장은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당연직 이사가 회의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당연직 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 제19조(서면의결) ① 이사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이사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및 감사에게 해당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이사회 결과를 감사 및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이사 4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법인의 주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한다.

제4장 조 직

제1절 구성원

- 제21조(구성원) ① 법인의 구성원은 임원과 직원(제24조의 센터 및 행정지원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직원의 채용, 배치 및 이동, 승진,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직제 및 정원 등) 법인의 직제, 정원, 인사,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3조(관련기관 직원의 파견) ①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및 법인 출연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또는 업무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파견받은 직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파견직원은 법인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센터 및 행정지원부서

제24조(센터 및 행정지원부서의 설치) 법인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및 행정지원부서를 둔다.

- 제25조(센터장) ① 각 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소관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진다.
- ③ 센터장은 임기 3년의 계약직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평가결과를 받는 때에 이사회에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사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센터장의 차기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의 성과내용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의 평가는 이사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센터별 성과평가위원회가 평가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⑥ 센터장 추천위원회와 센터별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센터장의 연봉과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신약개발지원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기초연구와 상업화를 연계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신약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7조(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첨단의료기기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과 각종 인프라의 지원을 통해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제28조(실험동물센터) ① 실험동물센터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약효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실험동물의 안정적 공급, 관리 및 질환모델 동물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개발용 생물자원의 개발, 수집, 보관, 공급, 중개업무와 임상연구센터의 연구를 위한 생물자원의 공급·연구를 통해 발생하는 생물자원의 수집 등 바이오리소스센터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제29조(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국내신약의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상용 의약품 생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센터운영) ① 각 센터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되, 중요한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의 방침에 따른다.

② 각 센터는 고유한 조직단위를 둘 수 있다.

③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이사장이 가지되, 직위가 없는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센터장에게 위임한다.

④ 각 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직, 인사,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예산회계의 독립)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센터의 회계 및 결산은 법인의 회계 및 결산과 분리하여 실시한다.

제32조(행정지원부서) ① 이사장은 법인 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략기획본부를 두며,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전략기획본부장은 임기 3년의 계약직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③ 전략기획본부장의 연봉과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이 전략기획본부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략기획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
2. 정관 제·개정, 공통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3. 단지 전체사업계획 수립, 조성 운영 및 지원
4. 단지 홍보, 의료산업의 국내외협력 지원
5. 입주기관 유치 및 지원
6. 의료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연구소 지원
7.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 8. 기금, 펀드 조성 및 신규투자 유치 지원
- 9. 의료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업화 지원
- 10. 그 밖의 단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의 설립 당시 설립자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법인의 설립이후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 1】 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35조(기금의 관리) ① 이사장은 법인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37조(운영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기관의 출연금·

보조금, 국내·외로부터의 찬조금·기부금·후원금, 기금을 포함한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법인을 통해 수행되는 외부수탁사업에 대한 간접관리비 등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징수요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 센터는 법인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공동부담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회 계

제38조(회계의 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 재산의 증감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계획과 예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42조(결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소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부속서류
2.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3. 사업계획서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4.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법인 감사의 의견서
5. 잉여금 처리안
6. 그 밖의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3조(준예산) ① 이사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

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4조(평가) ① 법인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법인은 매년 자체평가 후 결과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3개 주무관청은 공동으로 매 3년마다 법인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각 주무관청은 해당센터에 대한 사항을 평가한다.

④ 자체평가와 종합평가 외에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에 수시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평가결과는 법인의 이사장, 센터장의 보수 및 성과급 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⑥ 법인의 평가와 별도로 센터별 평가를 매년 주무관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5조(비밀엄수의 의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법인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발명·실용실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에게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외부감사) ① 법인에 대한 외부 정기감사는 주무관청 합동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인운영과 관련하여 부정·비위·진정·고발·언론보도 등으로 사안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주무관청간에 감사 주관기관, 일정, 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③ 주무관청은 소관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감사결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무관청간 합의하여 시행하되, 감사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 주도로 시행한다.
- ⑤ 법인의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주무관청 간에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산을 출연한 기관에 귀속시키거나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5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운영규정) ①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 중 보수, 인사, 복무, 직제, 회계에 관한 사항과 임원 및 센터장 추천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당 지급액의 변동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공고의 방법) 법령과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소재지에서 발행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주무관청) ①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및 보건복지부로 하되, 대표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② 대표 주무관청은 법인 운영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허가, 승인, 협의 등 제반 행정사항의 청구역할을 수행하되, 사전에 소관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3개 주무관청간 합의하여 대표 주무관청에 위임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지식경제부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보건복지부는 실험동물센터 및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각각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제56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주무관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최초로 임명하는 임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정관에 의한 감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대표 주무관청의 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주무관청에서 센터장 임명을 위해 추진한 절차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최초 이사장의 직무대행) 최초 이사장이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호선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별표1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기관명	금 액	비 고
충청북도	50,000,000	출연금
합 계	50,000,000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제정 2010. 1. 1 조례 제32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민간 기업연구소 등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법인격) 명칭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임원) 임원은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과 기획·정책 수립
2.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대 내·외 협동연구 추진
3.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평가
4. 의료산업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충
5.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6.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지원기관의 설립·운영 지원
7. 그 밖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보조금과 현물
2. 충청북도의 출연금과 현물
3. 그 밖에 공공기관과 연구개발기관 등의 출연금과 현물

제8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4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한다.